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의 심사	• 심사절차	22
	• 프로젝트 심사시 검토사항	24
	• 현지화비용 지원	25
사업의 추진	• 컨설턴트 고용	26
	• 재화와 용역의 구매	27
	• 차관 지출방식	28
사후관리	• 사업진행 및 완료 확인	30
	• 사후평가	31
	• 원리금 회수	32
차관지원비 지원제도	• 사업준비	33
	• 사업실시	34
	• 사후관리	35

- 《참고자료》 EDCF 지원절차도



EDCF 개요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가나 송유관 건설 사업]



EDCF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EDCF는 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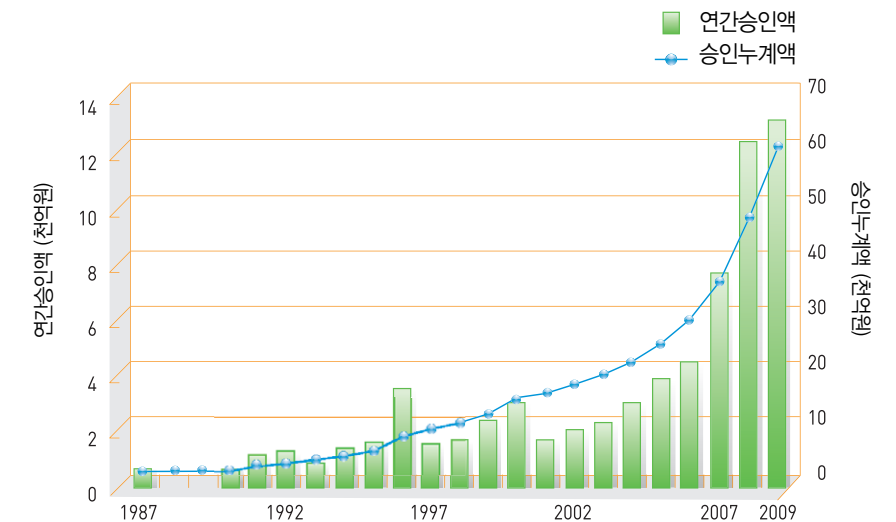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협력(Grant)은 주로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의 무상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허성차관은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원리금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환류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DCF 규모

'87년 설립 이래 '09년말까지 EDCF는 총 47개 국가의 231개 사업에 대해 총 5조 9,260억원을 지원(승인)하였으며, 총 집행누계는 2조 3,231억원입니다. '08년 처음으로 연간승인액 1조원을 돌파한 이래 '09년에도 1조 2,697억원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7년 ~ '09년 연간승인액 및 승인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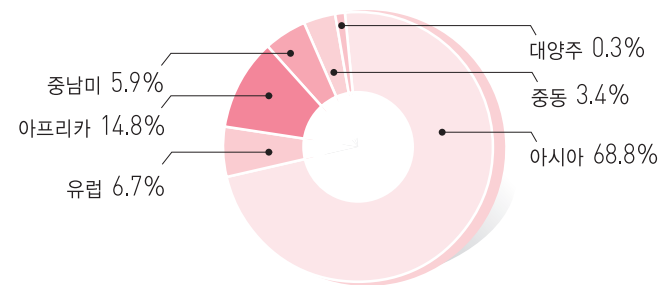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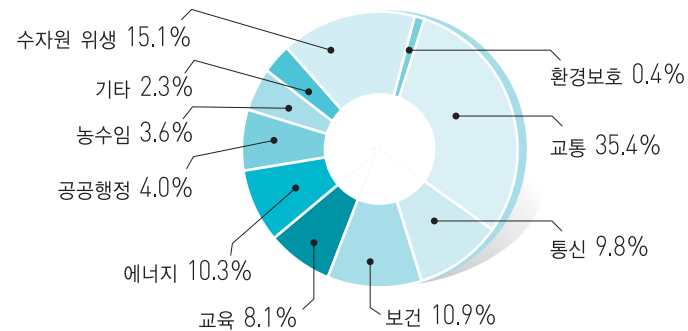
지역별 · 분야별 지원실적

EDCF 자금은 '87년~'09년간 지역별로 아시아 68.8%, 아프리카 14.8%, 중남미 5.9% 등의 순으로 지원해 왔으며, 분야별 지원실적은 교통 35.4%, 수자원 · 위생 15.1%, 보건 10.9%, 에너지 10.3%, 통신 9.8%, 교육 8.1%, 공공행정 4.0% 등입니다.

[지역별]



[분야별]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

EDCF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09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 · 풍력 · 바이오 등의 신성장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 F/S)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ADB 탄소펀드 출자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ADB의 미래탄소펀드(Future Carbon Fund)에 '10년~'14년간 EDCF를 통해 2천만불의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ADB의 미래탄소펀드는 ADB 역내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13년 이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할 예정이며, 동 펀드에는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의 공공 · 민간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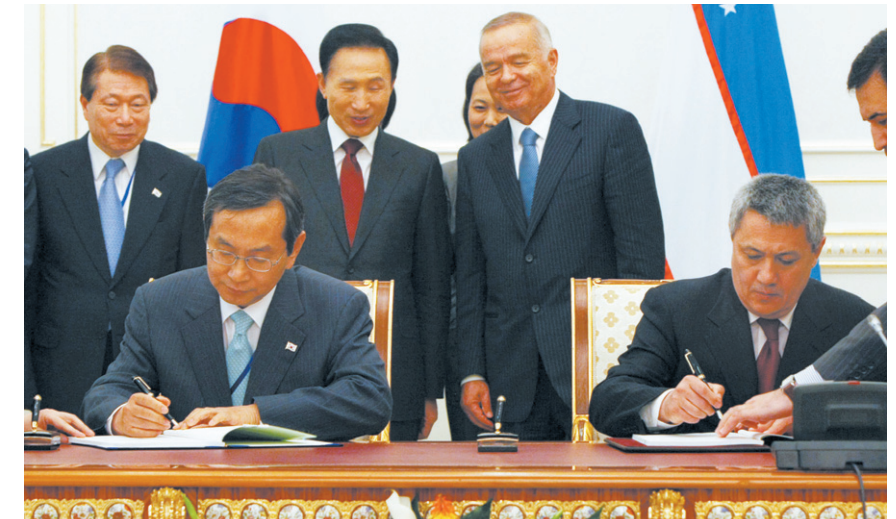
지원형태

○●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 상하수도설비, 병원, 환경 설비, 교통, 통신시설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Equipment Loan) :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 앞 지원
-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 : 개도국의 금융기관에 신용한도를 설정해 주고 각각의 최종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 할 때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
- 물자차관(Commodity Loan) :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 사업법인에 출자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의 과실을 출자자에게 배당 하는 구조로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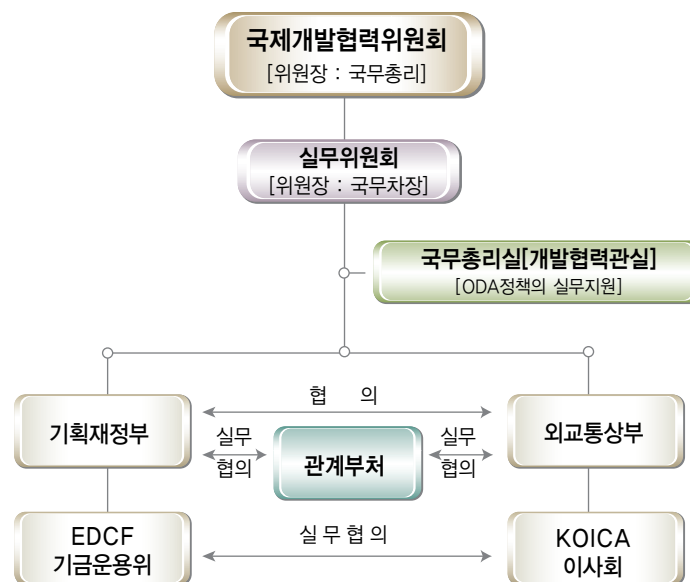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차관계약 체결]



운용조직 및 체계

○● ODA 정책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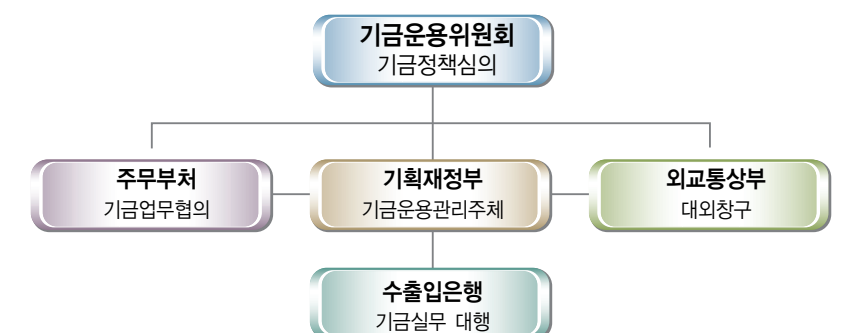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ODA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 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EDCF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 운용·관리에 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운 용 위 원 회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 포함 외교통상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 등 12명의 위원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추진 업무 주관,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진행 등
외교통상부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 수원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
수출입은행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의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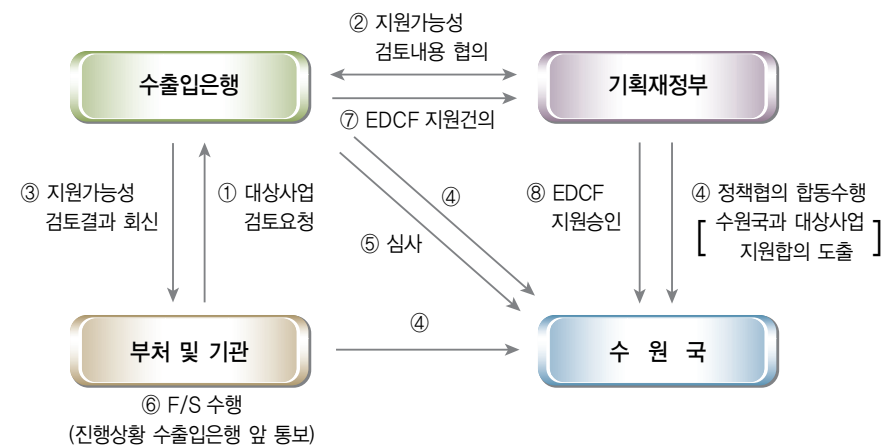




○● 정부 부처·기관간 연계지원

EDCF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기관간 원조사업의 연계성 강화, 중복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32개 부처·기관과 MOU를 맺는 한편 EDCF 연계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9년말까지 연계추진을 통해 9개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F/S) 소요자금(18억원)을 지원하고, 11개 사업을 승인(449백만불)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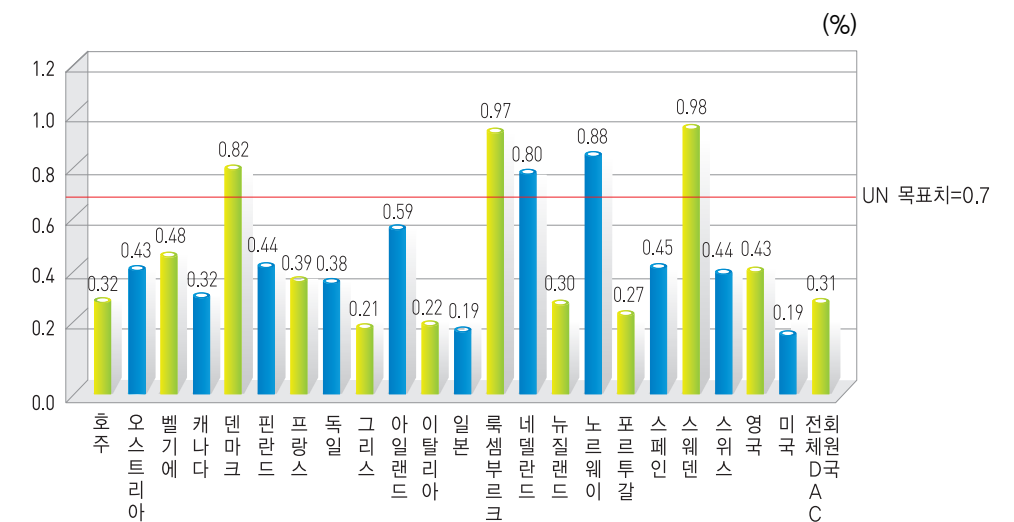
[연계사업 EDCF 지원절차도]



선진국의 ODA 규모

우리나라는 '10년 1월 선진국 원조 클럽인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08년 우리나라가 제공한 ODA 규모는 802백만불(순지출 기준)이며 ODA/GNI 비율은 0.09%입니다.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ODA/GNI 비율은 0.31%이며 우리나라도 DAC 가입을 계기로 ODA/GNI 비율을 '12년에 0.15%, '15년에 0.25% 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08년 ODA/GNI 비율 (순지출 기준)]





EDCF 차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앙골라 농업 현대화 사업]



지원조건

EDCF 차관은 지원대상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하고, 매년 세계은행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10년 현재 국가분류 현황('08년 1인당 GNI 기준)

- I 그룹 : UN 분류 최빈국
- II 그룹 : 최빈국을 제외한 1인당 GNI 975달러 이하 국가
- III 그룹 : 1인당 GNI 976~1,855달러 국가
- IV 그룹 : 1인당 GNI 1,856~3,855달러 국가
- V 그룹 : 1인당 GNI 3,856~6,725달러 국가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EDCF의 표준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동 범위 내에서 국가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기간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구 분	대 개 도 국 차 관
융 자 한 도	총사업비용 범위내 (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 이내)
이 자 율	연 0.01~2.5%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서비스 소요자금은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
상 환 기 간	40년 이내
거 치 기 간	15년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 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매 6개월 후취
담 보	- o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 담보 면제 - o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보증



지원대상 사업 발굴시 고려 사항

○○ EDCF 지원적격국 여부

EDCF 지원적격국은 소득수준, 경험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일부 조정되고 있으므로 담당자 앞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차관원리금 회수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예. 고채무빈국 중 채무구제가 진행중인 국가 또는 EDCF 차관원리금이 연체중인 국가)의 경우에는 차관원리금 회수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및 준비상황

사업계획이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조사(F/S)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자재차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기자재 가격 산정이 사업실시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OECD 수출신용협약 및 EDCF 관련 규정 부합 여부

타이드방식 지원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상업성 시비가 우려되는 도심지역에서의 통신, 전력, 제조업 등의 사업은 사전에 상업성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타이드방식이란?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일부 국가로 제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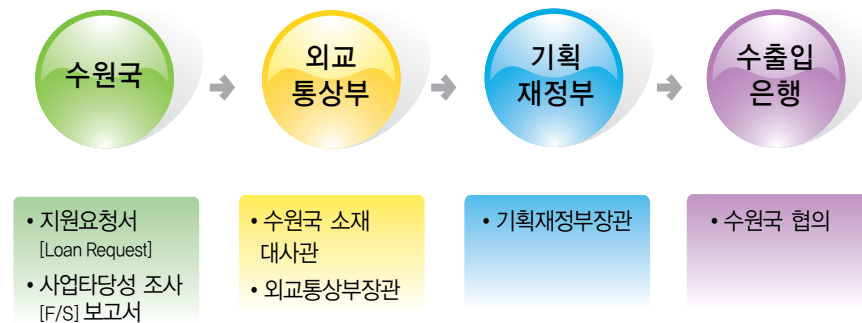
상업성 있는 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지원할 수 없는가?

- 상업금리 또는 공적수출신용조건으로 당해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의 현금흐름(통상 10년간의 현금흐름, 단 발전사업의 경우 12년)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말합니다.
- OECD 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의 원조부문 조항(제34조 Project Eligibility)에서 상업성 있는 (Commercially Viable) 사업에 대해 타이드원조 자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최빈국 사업, 양허성 수준이 80%를 초과하는 사업,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인 사업은 예외적으로 타이드원조 자금 공여 가능)

신청방법

EDCF 차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 조사(F/S)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Implementation Plan : I/P)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요청은 수원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경유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지원절차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지원요청	• 수원국 정부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정부에 제출
현 지 심 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입은행에 사업에 대한 심사 의뢰 • 수출입은행은 차관계약(Loan Agreement : L/A)의 주요 내용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심사시 합의 내용에 대해 토의록(Minutes of Discussion : MOD)을 체결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사 업 승 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
승 인 통 지	•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수원국 정부에 통보
정 부 간 협 정 결	• 수원국 정부가 수락하면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 단, 정부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 F/A) 체결국의 경우는 시행약정 생략
차 관 계 약 교섭 및 체 결	• 정부간 협정(시행약정 포함)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차관계약 체결
컨 설 턴 트 용 고	•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구 매	•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와 구매계약 체결
자 금 지 출	• 차관계약,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지출
사 후 관 리	•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 •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들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소액차관

소액차관제도는 '07년 EDCF 차관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차관규모가 2백만 SDR(약 3백만불 상당) 미만인 소액차관사업은 사업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차관 지원조건

- 차 관 한 도 :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단, 2백만 SDR 미만)
- 금 리 : 연 0.1% 이내
- 상환(거치)기간 :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구 매 방 법 :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경쟁입찰

※ 적격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사업 납품실적 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또는 자산총액 50억 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MDB 협조용자

국제개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협조용자(Co-financing)란, ADB, IDB, World Bank, AfDB, EBRD 등 주요 MDB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MDB 협조용자는 EDCF 단독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고속도로 교량건설사업(IDB 협조용자)]



사업의 심사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 현대화 사업]



심사절차

차관사업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원국의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예비검토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 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실시계획서(I/P) 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사업·법률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 사업준비상황 확인, 사업의 경제적·재무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확인, 차관도입 절차 및 관련 법규의 확인이 필요한 바,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차주 및 사업실시 기관 앞 질의를 통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심사

수출입은행은 심사역, 기술전문가, 법규역(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심사단은 동 현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국 정부와 토의록(MOD)을 작성하게 됩니다.

● 심사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 앞 제출

수출입은행은 지원요청서, 사업타당성 조사(F/S) 보고서, 사업 및 법률질의서 답변자료, 토의록(MOD) 등을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프로젝트 심사시 검토사항

사업의 성격이나 차관종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EDCF 지원적격국 여부
- 수원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환경
- 차관요청사업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차관요청사업 및 차관조건(차관금액,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의 적정성
- 수원국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의 차관요청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차관도입 관련 법적사항의 확인
- 차관요청사업의 상업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컨설턴트의 고용 여부
- 사업실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악
- 자금수급계획의 적정성 및 완공 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이 우리나라 및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현지화비용 지원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튀니지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



사업의 추진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 사업]



컨설턴트 고용

EDCF는 개발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을 효과적,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주의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과업분야의 경험·실적, 과업수행 방법·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컨설턴트 고용절차

- ① 사업실시기관의 컨설턴트 고용계획 작성 및 제출
- ② 과업명세서 작성
- ③ 사업실시기관의 후보자명단 및 입찰초청서 작성
- ④ 과업명세서, 후보자명단, 입찰초청서에 대한 EDCF의 동의
- ⑤ 입찰 실시
- ⑥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
- ⑦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 ⑧ 낙찰자 결정, 고용계약 체결 및 EDCF의 동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EDCF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수원국 정부의 책임하에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방식으로는 경쟁입찰(Competitive Bidding), 제한경쟁입찰(Limited Competitive Bidding), 경쟁구매(Shopping), 등이 있습니다.

○● 구매 절차

- ① 사업실시기관의 입찰서류작성 및 입찰서류 승인신청
- ② EDCF의 입찰서류 승인
- ③ 사업실시기관의 입찰공고
- ④ 입찰참가기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필요시)
- ⑤ 입찰 실시
- ⑥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
- ⑦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 ⑧ 낙찰자 결정, 구매계약 체결 및 EDCF의 동의



차관 지출방식

수출입은행과 수원국 정부간에 체결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 : L/A)이 발효되고 차관사업의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차관계약에 규정된 지출방식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이 시작됩니다. 차관자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이루어지며 차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 이행정도에 따라 분할 지출됩니다.

차관자금의 지출방식은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용장방식, 사후지급방식, 직접지급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신용장방식(Commitment Procedure)

- ① 사업실시기관이 자국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을 개설한 후 한국의 지정 외국환은행에 통지
- ② 한국의 공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시
- ③ 지정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 ④ 수출입은행은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을 대신해서 상환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발급하고, 지정 외국환은행은 이에 의거 매입대금을 지급

○● 사후지급방식(Reimbursement Procedure)

- ① 사업실시기관이 먼저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우리기업에게 지급한 후 그 대금의 지출을 수출입은행에 요청
- ② 수출입은행은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후 수원국 정부 계좌에 대상금액을 이체

○● 직접지급방식(Direct Payment Procedure)

- ① 사업실시기관이 수출입은행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도록 요청
- ② 수출입은행은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후 대상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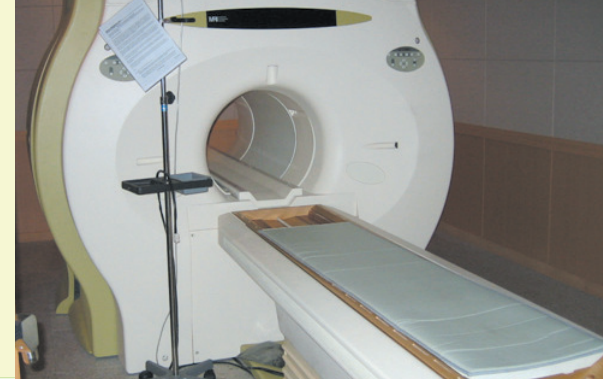


[요르단 폐수처리 시설 확충사업]

>> 사후관리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스리랑카 의료장비 구매사업]



사업진행 및 완료 확인

일반적으로 사업의 이행현황은 최초 자금지출 후 차관사업의 완료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이행상황, 사업소요자금의 집행계획 및 실적,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진행보고서를 차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시기관은 예비완공확인서(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 : PAC)를 발급하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시운전, 정밀확인 등을 통하여 공급된 재화와 용역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최종완공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 FAC)를 발급합니다. 이 때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 PCR)를 작성하여 수출입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중국 목단강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평가

차관사업의 사후관리란 사업의 진행과정 및 목적에 따라 사업완공 전의 관리와 사업완공 후의 관리로 구분되는 바, 사후평가란 사업완공 후 일정기간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시목적 달성 여부와 경제사회적 지원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평가는 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사업의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 유사사업의 발굴, 심사 및 사업실시 과정에서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피드백(Feedback)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후평가는 완공 점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되며, 관련 자료의 입수, 관계자 앞 질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여부, 사업 선정의 적정성, 운영·유지상 문제점, 사업지역 및 수원국에 미친 파급효과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튀니지 올림픽 스타디움 사후평가]



차관지원비 지원제도

원리금 회수

차관자금의 원리금은 수출입은행과 수원국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의 원리금상환 계획(Amortization Schedule)에 따라 회수되는데 통상 차관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6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되며, 이자는 차관잔액에 대해 6개월마다 받게 됩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국이 차관지원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됩니다. 차관지원비 지원제도는 사업실시 단계에 따라 사업준비, 사업실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준비

○● 지원유망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F/S) 작성 또는 이미 작성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사업준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용의 산정
- 사업실시계획의 수립(사업범위, 구매계획,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공정 계획, 자본조달계획 등)
- 재무적 ·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차관사업의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환경영향 평가



사업실시

○● 차관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 컨설턴트 고용 및 공급자 선정관련 서류 준비 및 검토
- 사업공정 또는 물품검수 등 구매관련 문제 해결 지원
-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등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사업진행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완
-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사업]

사후관리

○● 차관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 사업완공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 필요시 설비운전, 작동 등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
-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 지원 등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EDCF 자원절차도]



*정부간 기본약정(F/A) 체결국은 시행약정 생략